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79
----------	------

제출일자 : 2024. 10. 21.

제출자 : 달성군의회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이 폐지된 바 이 규정과 연관된 불필요한 조항의 정비를 통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에 준용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2)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4. 9. 10. ~ 10. 2.)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사회복지과와 합의되었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p> <p>③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u>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⑤ <u>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u> 2. <u>「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 3. <u>사회보장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u> 	<p><u><삭 제></u></p>

관 계 법 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16.1.25]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7.27] [시행일 2022.1.28]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
-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⑤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제28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1.9.8]

제29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시·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4.20] [시행일 2015.7.1]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4.20] [시행일 2015.7.1]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9.8.]

제30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4.20] [시행일 2015.7.1]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9.8.]

제30조의2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이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31조 (회의 및 의사)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9.8.]

제32조 (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8.]

제33조 (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8.]

제34조 (수당과 여비)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9.8.]

제35조 (운영 규정)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각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31.]